

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

★★ 부정행위자 신고, 적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. ★★

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및 「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」(교육부훈령 제490호)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, 더하여 아래 ①~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.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”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《부정행위 해당 유형》

-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-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-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
-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-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
-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
-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
-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
-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
-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
《시험장 반입금지 물품》 ⇒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(시험 시간,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)

△휴대전화 △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 등) △디지털 카메라 △전자사전 △MP3 플레이어 △테블릿PC △카메라펜 △전자계산기 △라디오 △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△결제·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있는 시계 △전자담배 △통신(블루투스)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

《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》 ⇒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

△신분증 △수험표 △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△흰색 수정테이프 △흑색 연필 △지우개 △샤프심(흑색, 0.5mm) △시침·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·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△마스크(감독관 사전 확인) 등

※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, 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결제·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없는 시계임

- 시침, 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, 결제·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

《추가유의사항》

※ 흑색 연필, 검은색 컴퓨터 사인펜, 샤프(시험장 지급)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(연필은 시험실에서 지급하지 않음)

※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사유로 휴대가 불가피한 물품*은 시험 전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사전 확인(명단 관리)과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 등을 거친 후 휴대 허용(입의 휴대 시 압수 또는 부정행위 등 조치)

* (예시) 보청기·연속혈당측정기(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사전 확인)

돋보기·귀마개·방석(감독관 사전 점검) 등

※ 시험실에서 수험생용 컴퓨터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,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필요시,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

※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